

#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5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 . 5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2006년도 지방세 감면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부처간 협의결과 채택된 개선내용중 상위법령 개정지연으로 조례개정이 유보되었던 「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」을 신설하고,
-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4년대비 상승분의 50%를 경감하여 적용함은 2005년도만 해당되므로 폐지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가.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의 고령자(연간 종합소득 1,200만원 이하)가 소유하는 주택(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 이하)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(안 제7조의2).
- 나. 2005년도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조항을 폐지함(안 제31조).

개정 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2조, 제9조
-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」 제3조의2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**사전에고결과 : 의견없음**

○ 입법예고 : 2007. 3. 29. ~ 2007. 4. 17.(20일간)

**기타 참고사항**

○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(2006.10.27)

#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제7조의2(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)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」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 고령자(연간 종합소득이 1,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)가 소유하는 주택(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,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)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”

제31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시한)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- ③(일반적 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소관 실·과		세 정 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권혁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담당 서근식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손석주 (행정 2198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7조의2(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)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」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고령자(연간 종합소득이 1,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)가 소유하는 주택(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,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)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</p>
<p>제31조(재산세 과표경감)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